



I 기획특집

한·미 FTA의 파고를 넘어...

- 한·미 FTA 협상 내용 및 의의 : 이현재 / 5
- 한·미 FTA가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우장명 / 15
- 한·미 FTA에 따른 충북경제의 영향과 과제 : 조택희 / 30
- 충북 무역구조의 특징 및 수출증대 방안 : 윤영한 / 42

한·미 FTA 협상 내용 및 의의

이 현 재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과정

1995년에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면서 세계무역기구는 각 국가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FTA는 기본적으로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무역협정으로 일종의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2007년 3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94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발효 중이며 FTA도 이 협정의 일부로써 각 국가간의 교역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지역무역협정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세계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던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고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2006년 9월 1일 EFTA FTA, 그리고 2007년 6월 1일 ASEAN FTA (상품에 국한)를 발효시켰다. 또한, 캐나다, EU,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역량의 비중이 크고 투자가 활발한 EU를 2003년 8월에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이후 2007년 5월 6일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올 해 5월 7일부터 11일까지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FTA 협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 동안 축적해온 협상잠재력을 바탕으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인 미국과 FTA의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세계화를 달성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며, 또한 대규모 소비시장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경우 2003년 8월에 미국을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고 2006년 2월에 추진을 발표한 이후 8차례에 걸쳐서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4년 동안 팽팽한 찬반논란 속에 추진되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4월 2일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개방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한·미 FTA 타결로 양국은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열게 되었고,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문화부문에서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즉,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양국 동맹관계의 재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도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교류증대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세계무역기구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미 FTA협정 타결은 전세계 국가들의 양자간 FTA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협정 부문별 타결 내용

한·미 FTA 협정의 부문별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상품무역분야, 서비스/투자분야 및 일반분야로 구분되는데, 상품무역분야의 항목으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TBT,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10개로 구분된다. 서비스/투자분야의 항목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의 5개이며, 일반분야의 항목은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및 총칙의 6개이다. 각 분야별 타결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품관세를 철폐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투자부문은 단계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였고, 농업 및 공공서비스는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타분야에서는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장기적으로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및 94% 조기 철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협정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수입검역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3000cc 미만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 이내에, 픽업트럭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8%인 자동차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배기량 기준 세제를 개편하며 자동차세제를 현행의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하였다. 그리고 자동차특소세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였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외적 취급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쇠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추는 한편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오렌지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이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섬유 항목에서는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 원사기준을 도입하였고, 원산지 항목에서는 북한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채택하였으며, 의약품/의료기기 항목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비스 항목에서는 법률(3단계)과 회계(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항목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 항목에서는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로 하였으며, 투자 항목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에 합의하여 투자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1〉 한·미 FTA 협정 부문별 타결 내용

분 야	항 목	주 요 타 결 내 용
상품무역분야	상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및 94% 조기철폐 합의 •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상품별로 탄력적 적용) 확보 •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 합의 •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 인정
	농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외적 취급방식 도입 (현행관세 및 쿼터 유지, 관세 장기간에 걸쳐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 •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 이후 수입검역조건 개선 착수 • 한국은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10년, 사과와 배 20년 이내에 관세철폐 • 오렌지는 계절관세 적용 (9월-2월은 50%,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30%를 적용하며 이를 7년간 유지)
	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및 대미수출의 61%(수입액기준)는 즉시 철폐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도입 •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원 산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 원산지판정 기준 보완 •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의 원산지판정 특례 적용 •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
	통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제도 도입 •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통관소위원회) 설치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수단 도입 • 가격 또는 물량에 관한 협의 강화 •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양자간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제외 합의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위생검역(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협의위원회 설치 • 투명성 조항 삭제 합의 • 기술이전 및 인적교류 확대 합의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험 및 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대우 보장

자료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분 야	항 목	주요 타결내용
상품무역분야	자 동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을 3년내 철폐) • 한국은 8% 관세 즉시 철폐 • 미국은 3000cc 이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폐지 • 자동차부품 24개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타이어는 5년내 폐지 • 한국의 자동차세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한국의 자동차특소세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 신속 분쟁해결절차 도입(기존절차의 1/2로 단축) •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 배기량기준 세제개편 방안 •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 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및 OBD장착 의무화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환경인증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 침해여부 검토 • 의약품위원회 설치 • 독립적 이익절차 마련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방안 합의
서비스/투자분야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간이나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합의 • 정부규제 권한 확보 • 내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 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재량권 명시 •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서 비 스	<p>〈협정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체계 구축 • 유보안의 작성 범위 확정 •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p>〈유보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3단계), 회계(2단계), 세무(외국법자문분야 포함)를 단계적으로 개방 •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유보 • 방송서비스의 부분개방 •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유보 • 스크린쿼터제도의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적으로 확대 • 에너지(전력,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기준 명시화 • 택배(특급배달)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 도모

자료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분 야	항 목	주요 타결내용
서비스/투자분야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지속 • 금융부문으로 인한 교차보복 금지 • 금융산업 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협정적용 배제 • 금융 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가능성 배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기술선택의 자율성)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외국인 지분제한 유지) • 해저케이블 사업자에 비차별적 대우 보장 •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규제권한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에 비차별적 대우 보장 • 제품인증서 상호 인정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상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관행 유지 • 오프라인상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 •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유화 규범과 서비스 개방안에 대한 원칙 합의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전자인증 관련 양국의 고유시스템 인정 및 국경간 정보이동 합의
일반분야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허용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시 까지 유보 • 특히 존속기간 연장은 심사청구 후 3년 기준 • 저작물 병행수입 허용 •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형사처벌시 양형기준은 권장사항을 기준 •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실손배상 원칙 유지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 미국 본토내 실적요구 금지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명령제 도입 • 정부지정 독점에 대한 의무의 "상업적 고려"에서 공공요금 제외 • 소비자보호협력 및 경쟁법 집행관련 청문절차 보장

자료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분 야	항 목	주요 타결내용
일반분야	노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노력 의무 •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 분쟁해결절차 도입(노동협의회 설치)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참여제 확대 • 환경법 위반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 • 환경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합의
	총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기간 연장 • WTO 수준에 의거하여 비위반 제소 • 한국의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조세조치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

자료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3. 한·미 FTA 협상 결과의 평가

이번의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 자동차, 섬유 및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은 경쟁국가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농축산물이나 의약품/의료기기는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 회계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시장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혀 개방되지 않았으며,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도 크게 개방되지 않았다. 한·미 FTA를 추진하던 초기단계에서의 계획은 서비스분야를 개방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농산물인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지나치게 양보하고, 관세철폐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비관세부문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협정문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협정이 발효되면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노동계는 한·미 FTA로 인해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의 질이 떨어지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25일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지난 4월 2일 협상타결 후 논란에 휩싸였던 일부 핵심쟁점 사항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2>는 한·미 FTA 협상의 쟁점 내용인데 핵심쟁점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업 항목에서는 농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섬유 항목에서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종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 항목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동차 항목에서는 관세환원(스냅백) 조치의 적용대상이 명확치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항목에서는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최저 신약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 항목에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적용범위가 명확치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금융서비스 항목에서는 공공부문의 금융서비스를 지나치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미 협상 쟁점사항

항 목	주요 쟁점 사항
농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물량이 충분치 않을 것임 • 미국 농산물 가격경쟁의 원천인 보조금이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섬유제품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한국 섬유업체의 근로자 수 등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여야 함
원 산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을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 내 일반적 환경기준, 근로기준, 임금, 경영, 관리, 관행 등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근로기준과 임금체계는 국제규범에 크게 미흡함 • 원산지를 검증받기 위해 예고없이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자 동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치 않은 관세 환원조치(스냅백) 조항의 적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냅백 조건이 포괄적이라서 미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함 - 특정행위가 FTA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승용차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 관세(미국 25%, 한국 8%)로 복귀할 수 있음 • 자동차 원산지 판정 기준의 미흡 (부가가치 기준이 한국의 요구보다 지나치게 낮음)하여 사실상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 완화는 조세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의약품/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분야에서 최저 신약가격을 인정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보험약 가격이 경쟁적시장 도출가격에 기초하고 있어서 가격이 상향조정될 소지가 있음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안전, 환경분야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점 -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도 제외됐으나, 부동산정책 중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양국간 이견 존재 가능 - 조세정책도 ISD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됨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현행 보험상품은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신상품은 개발할 수 없음 • 농협이나 수협 등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함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의 한·미 FTA 체결로 양국간 많은 무역장벽이 해소되어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업종별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즉, 농축업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전자 및 정보기술 부문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2480억 달러의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업,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환경과 노동분야에 초점을 맞춘 신통상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를 계기로 추가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24일 한·미 FTA 협정문을 발표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마련한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부분적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4. 향후 양국의 비준절차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문의 내용을 검토해 왔는데, 향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7월 1일 이전에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비준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로 한·미 FTA가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는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회의 비준통과에 실패하게 되면 한·미 FTA협상은 무효가 된다. (<표3> 참조)

<표 3> 한·미 양국의 FTA 협정 비준절차

기 간 별	한 국	미 국
4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협정문 작성 • 임시국회 상임위별 내용 검토(4월 3일~5월 2일) • 법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에서 의회에 협정문 체결 의향 통보 • 민간자문그룹 리포트 제출 • 법률적 검토
7월 1일 이전	정식서명 및 협정체결	
9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논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개정사항 의회에 통보 • 행정부에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 • 세출위원회 하원 보고 (60일 이내에 하원 표결) • 재무위원회 상원 보고 (30일 이내에 상원 표결)
비준통과시	발 효 (대통령 법안서명 및 공포)	
비준통과 실패시	협상무효	

한편, 미국은 행정부에서 의회에 협정문 체결의향을 통보하고 민간자문그룹이 체결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도 7월 1일 이전에 서명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협정문을 하원의 세출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친 후,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의회의 찬반투표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의 협정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회가 요구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통상법을 내세워 노동과 환경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역불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동차나 쇠고기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협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미국 국내정치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미국의 정치적 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제2의 개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14조 1천억 달러의 경제권으로써 단일 국가 간 무역협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미 FTA를 통해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못지않은 경제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를 바탕으로 현재 720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간 무역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우리나라의 네번째 FTA인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에 걸쳐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상을 확보하고 세계통상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EU나 중국 등과의 FTA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로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역량이 증대되고, 외국인의 투자확대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촉진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어 소비자후생도 크게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경제대국과의 급속한 교역증대로 경제적 종속화의 우려가 있으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 절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의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정부는 15년에 걸쳐서 농축산업 부문에

130조원을 투입했지만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미 FTA 체결 직후 정부는 필요한 피해보상으로 10조원을 예상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을 마련하여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경쟁열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주체는 민간부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면서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한·미 FTA협상 체결은 사실상 게임의 법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미 FTA의 성패 여부는 이와같은 게임의 법칙 안에서 우리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